

최신 판례 예규

Marketing Tax consulting

파견법에 규정된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경우는 세액공제 적용되지 아니함

「파견법상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파견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30의2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법규법인-5222, 2023.04.12

질 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파견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30의2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사용사업주인 내국법인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파견된 근로자를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란 감면대상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임

사전법규법인-130, 2023.05.17

질 의

- 질의법인은 2022.8월 설립되어 2022.12월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으로 등록된 법인으로,

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으로 등록된 법인으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음

- 질의법인은 2022년에는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고, 감면대상사업 외에서만 소득이 발생함

질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2항의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에 감면대상사업 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란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5년간 보관하여야 함

사전법규법인-1213, 2023.01.26

질 의

- 질의법인이 전기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로부터 청구받아 전기사용자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증명서류 구비 방법

회 신

「전기사업법」 제2조 제12의9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전

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공사로부터 청구받아 전기사용자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해당 부담금을 수취하는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청구서,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법규소득-307, 2023.05.25

■ 질 의

- 질의인은 “AAA”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 영업상 필요*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먼저 신청하였으나
 - * 질의인은 고객 선유치 목적으로 사업개시 전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등을 위해 부득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함
 - 관할 구청으로부터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아직 발급하지 못한 상태로, 실제 영위할 업종인 “BBBB”이 아닌 “서비스/◇◇◇” 업종으로 ‘22.00.00.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으며
 - 위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2.00.00. “BBBB”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함

질의

- 사업자등록증상 업종과 실제 영위하는 업종이 서로

다른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상「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에 따른 대상업종 해당여부의 판단기준

■ 회 신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중견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투자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5조(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

조세정책과-1206, 2023.05.24

■ 질 의

- 중견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 회 신

1989.12.31.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중견기업이 공업단지 내 투자를 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5조(2017.12.19. 법률 제15227호)에 따라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